

영등포구의회
제20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
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김 용 범 의원 대표발의】



2017. 5. 16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
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05호로 2017년 5월 11일 김용범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

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

(안 제3조, 안 제4조)

다. 시행계획 수립과 공공기관과의 협력지원 사항 및 교육홍보를

규정함 (안 제5조, 안 제6조)

라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

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: 예산반영 필요

다. 기 타: 입법예고(2017 . 5 . 1 . ~ 5 . 8 .) 결과, 접수된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은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
-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
-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시행계획 수립과 공공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
- 안 제7조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.

○ 본 조례안은

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, 입법 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참 고 자 료

1 범죄피해자 보호법

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2.30.>